

민원사무명	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.대부 신청				
민원내용	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청 시 제출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, 제31조				
주관부서	재무과	협조부서 (기관)	없음	처리기간	없음
현장조사사항	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여부 확인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	접수 ⇒ 검토 ⇒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결정 ⇒ 사용허가서 교부, 대부계약 체결(위임 전결: 과장)				
구 비 서 류	<p><민원인 제출서류> 1. 공유재산 [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수익허가,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부] 신청서</p>				
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없음				
후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차	시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없음				
수수료 및 제반경비	○수수료: 없음 ○사용료.대부료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산출한 금액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없음				